

우리나라 해외석유개발사업 20년

이 철 규

< 대한석유협회 개발팀 차장 >

최근 한국석유공사와 SK(주)가 베트남 해상에 위치한 15-1광구에서 가채매장량 4억 2천만배럴 규모의 유전을 발견하고 성공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김대중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 치사를 통하여 “베트남 유전개발 성공을 계기로 국내외 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까지 자주개발원유도입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00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석유소비량은 8억 9천만배럴정도로 자주개발도입율 1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연간 9천만배럴(245천 배럴/일)을 해외에서 개발 도입하여야 하며, 지금과 같이 소비증가가 이어질 경우 2010년에는 최소한 350천 배럴/일 이상을 개발도입하여야 한다. 2000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주개발원유도입율은 1.9%로 48천 배럴/일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10%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해외석유개발사업의 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이 많은 초기 투자비가 소요되고 회임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인 석유개발사업을 포기하거나 관련조직을 축소함에 따라 해외석유개발사업은 급격히 침체되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석유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년초 응자비율을 10% 상향조정하였고 성공사업에 부과하는 특별부담금을 대폭 경감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였으나,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민간기업들의 인식부족과 투자여력의 부족, 그리고 투자우선순위 하향조정 등으로 분위기는 반전되지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을 지탱할 기반자체마저 흔들리고 있는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외환위기 이전 민간기업에 종사하고 있던 석유개발 기술인력이 100 여명정도였으나 현재 30명 수준으로 급감한 사실만으로도 석유개발사업의 현주소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에서의 석유개발 성공이 비단 베트남 사업에 참여한 일부 회사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고 우리나라 석유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해외석유개발사업의 의의

이제 2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된 우리나라 해외석유개발사업은 2010년 자주개발원유 10%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베트남 유전의 성공으로 석유공사가 세계적인 석유회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은 업계 모두의 바람이겠지만, 해외석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민간기업의 사업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민간기업을 육성하여야 기술인력의 수급이 원활해지며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기술인력이 양성될 수 있다. 또한 한정된 정부 지원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기회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해외석유개발사업은 국가적 관점에서의 안보적인 필요성과 민간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성을 모두 갖춘

사업으로 첨단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고도의 기술인력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이다.

원유수요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석유수입량은 2차석유파동 당시 하루 50만 배럴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말 현재 하루 245만 배럴, 연간 8억 9천4백만 배럴, 금액으로는 252억 달러로 5 배정도 증가되어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번째 석유수입국이 되었으며, 소비량도 220만 배럴/일로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러시아에 이어 6 번째 소비국으로 부상하였다. 국민총생산(GDP)대비 원유수입비중도 99년 3.7%에서 2000년에는 5.5%로 급증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1차 석유파동이 발생한 1974년의 6.1%에 근접한 수준으로 에너지 위기시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가 2010년 10%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원유의 자주개발도입율도 2000년 말 현재 1.9%에 불과하여, 우리 나라와 비슷한 수입국가인 일본의 15.3%나 프랑스의 7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석유파동이 닥쳐 올지라도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를 위하여 석유개발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더욱이 해외개발을 통한 원유도입이 원유의 칙수입보다 더 경제적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해외개발 원유도입단가는 평균 배럴당 11.1달러수준으로서 99년도 원유 도입단가 16.9달러, 2000년도 원유도입단가 28.2달러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하다. 이는 해외석유개발사업이 국가적으로 국제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석유개발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1996년과 1997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낮은 환율과 저유가의 호재속에서 폐루 8광구와 오만 부카광구 등 10개의 소규모 생산유전을 매입하였다. 이후 외환위기에 의한 환율 상승과 지난해부터의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이들 광구에서 지난해부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폐루 8 광구의 11.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우 인터내

셔날(주)의 경우 연간 100억원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다. 또한 해외석유개발사업은 이와 관련된 건설 및 설비사업의 진출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산유국과의 자원외교의 장을 제공하는 부가적인 가치가 매우 큰 사업이다.

해외석유개발사업의 현 주소

우리나라가 해외유전개발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지난 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을 겪고 나서부터이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이 원인이 되었던 1차석유파동으로 국제 유제는 2.8\$/배럴에서 12\$/배럴로 급상승하였고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던 우리 경제에 커다란 시련을 주었으나 석유소비량이 많지 않아 1년 여 만에 그 충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2차 석유파동은 1차석유파동이후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석유수입량이 일 50만배럴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및 사회적인 충격은 지대하였다. 국내 유가는 무려 7 차례에 걸쳐 총 337% 가 인상되어 75년 이후 안정성장을 지속하던 우리 경제가 뒤흔들리게 되었으며 1980년에는 유례없는 4.6%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석유의 비축과 석유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1979년 석유의 비축과 국내외 석유개발을 위하여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창립하였고 원유도입방법에서도 장기계약 도입방식으로의 변경과 함께 도입선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해외석유개발 사업은 1981년 코데코에너지(주)가 인도네시아 마두라광구에 처음 진출한 이후 1983년부터 석유공사와 SK 등 다른 기업들도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정부에서도 민간기업의 석유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성공불용자제도를 도입하였다. 1984년 진출한 예멘 마리브유전에서 거대 유전이 발견된 이후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2

년까지 참여한 38개 사업중 단 2개 사업만이 생산유전참여 사업일 뿐 나머지 모든 사업이 탐사광구에 대한 단순 지분참여였고, 이들 중 대부분의 사업이 상업적 유전 발견에 실패함에 따라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포트폴리오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의 개발사업에 대한 응자 등 석유개발사업의 활성화 정책이 뒷받침되면서 1995년부터 외환위기가 발발한 1997년 말까지 3년동안 10개 생산광구, 3개 개발광구 및 28개 탐사광구 등 총 41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석유개발사업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와 더불어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석유개발업체는 커다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된 반면 환율상승으로 투자비에 대한 부담이 배가되었으며 기업구조조정과 부채비율 200% 제한으로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기업구조조정의 첫 번째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3년동안 신규사업 진출이 11개 사업에 불과하였으며 반면 철수하거나 매각한 사업이 13개 사업에 이르렀다. 특히 1999년에는 LNG 구입과 관련해 참여한 카타르 가스전을 제외할 경우 신규참여 사업은 석유공사가 진출한 수리남 탐사광구 1건에 불과하며, 민간기업은 단 1건의 신규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한 석유개발사업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다(그림 1 및 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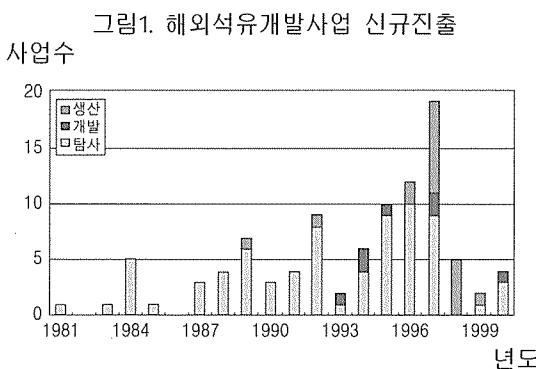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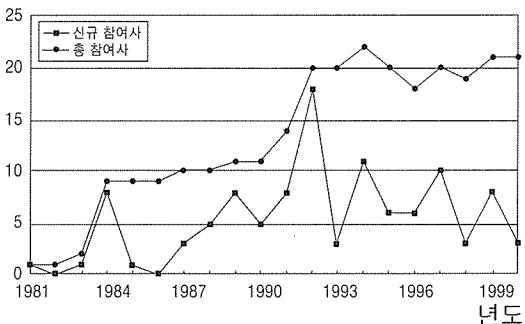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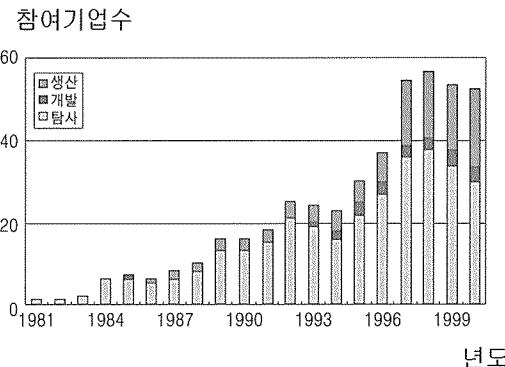
그림2. 연도별 석유개발 참여기업수



석유개발 참여기업은 1987년 10개사에 도달한 후 석유개발사업의 위험분산과 민간기업의 참여유도를 통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콘소시엄형태의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우대정책(단독참여에 비해 응자비율 10%우대)을 시행한 결과 5년만에 20개사로 증가하였고 1994년 22개사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20개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2. 참조). 석유개발사업수가 1992년 20여개 사업에서 현재 2배가 넘는 50 여개 사업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그림 3. 참조) 참여기업수가 증가하지 않은 것은 석유개발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한 기업의 경우 석유개발사업을 확장한 반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기업들이 도태되었음을 의미한다. 지난 20년동안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은 총 27개사로 이중 6개사는 석유개발사업을 완전히 포기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생산광구만 보유하고 석유개발사업 관련부서를 해체한 기업도 7개에 달하며,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신규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석유공사, SK, 대성, 대우, 동원 등 5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0년 말까지 20년 동안 우리 기업들은 총 36개국 98개 사업에 참여하여 이중 45개 사업을 사업성 결여로 철수하거나 매각하였고 생산사업 19개, 개발사업 4개 및 탐사사업 30개 등 총 53개 사업을 진행중으로, 정부 응자지원금 7억 2천만 달러를 포함하여 총 32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이중 25억달러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78.2%에 달한다(그림 3. 참조).

그림2. 해외석유개발사업진출현황



추진 방향과 대책

해외석유개발사업을 활성화를 위한 선행조건은 다시 강조하지만 민간업계의 사업참여를 활성화하는 길이다. 민간업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없이는 석유개발사업의 진로는 불투명하다. 지금과 같이 자금부족으로 투자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을 투자회임기간이 길고,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석유개발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보다 실리적이고 직접적인 투자유인 정책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석유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순수 민간주도의 석유개발전문회사가 설립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팀 또는 과 단위의 사업추진 형태는 기업의 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석유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해외석유개발을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석유개발을 주업무로 하는 전문회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최근 일부 민간기업들은 석유개발부서를 분사하려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아 석유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벤처기업 형태의 전문회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는 어느 형태이든 다수의 석유개발 전문회사의 설립을 유도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수의 석유개발회사가 설립되고 세계석유시장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통폐합이 이루어지면서 대형화가 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석유개발 전문회사의 설립을 유도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채비율 산정시 에특용자금을 제외시켜야 하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지원자금의 대출 및 승계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의 기준조건으로서 기업부채비율 200%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은 민간기업의 석유개발 사업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민간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응자비율을 10% 상향조정하였는데 80%를 응자지원할 경우 부채비율이 400%가 되므로 기업전체의 부채비율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탐사사업에 지원되는 성공불용자의 경우 사업실패시에는 감면되고 성공시에만 상환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의 성패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외석유개발사업에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특성상 석유개발사업에 투자된 자금을 전액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등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사형태로 설립된 석유개발전문회사나 자원 보유국의 법제에 의하여 자원 보유국 또는 제3국에 설립한 자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자회사를 통한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으나 조세조약이 체결된 일부 국가로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 자원보유국들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석유개발사업에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해외석유개발을 위해 설립된 전문회사나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모기업이 직접 투자한 것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생산광구를 취득했을 때 구입가액의 일부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특별상각을 인정하는 해외광업권 취득세액공제제도와 해외석유개발사업자가 해외석유개발 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일부를 손실준비금으로 인정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손실준비금제도의 도입으로 해외석유개발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